

| | | |
|-----------|--------------------|------|
| 의안번호 | 제 호 | 의결사항 |
| 의결 연월일 | 2025. . . (제 회)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제출자 |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
| 제출연월일 | 2025.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재활용의무대상이 되는 ‘양식용 부자’의 기준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양식용 부자’의 정의를 직접 규율함으로써 법령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재활용 규모의 증감, 재활용기술 발전, 유가물 가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에 대한 재활용부과금 산출단가인 기준비용을 현실화하고, 일부 품목의 재활용의무 면제 기한을 삭제하여 영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중 ‘수산물 양식용 부자’의 범위를 합성수지재질의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18조제8호)

나.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재활용기준비용 개정 및 재활용비용산정지수 적용 방안 보완(안 제27조 및 별표 6)

다. 합성수지재질의 제품에 대한 재활용의무 면제 기한 삭제(안 별표 4)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합성수지재질의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

제2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활용기준비용이 제·개정이 된 연도에는 재활용비용산정지수를 1.0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11호를 삭제한다.

별표 6 제1호부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구분 | 종류 및 재질 | 재활용기준비용 |
|--|----------|----------|
| 1. 제18조제1호에 따른 포장재 | 가. 종이팩 | |
| | 1) 일반팩 | kg당 288원 |
| | 2) 멸균팩 | kg당 488원 |
| | 나. 유리병 | kg당 52원 |
| | 다. 금속캔 | |
| 1) 철캔 | kg당 133원 | |
| 2) 알루미늄캔 | kg당 183원 | |
| 라.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 | |
| 1) 발포폴리스티렌(EPS)·발포폴리프로필렌(EPP)·발포폴리에틸렌(EPE) 단일·복합 | | kg당 240원 |

| | | |
|--|--|--|
| | 재질 포장재 2) 폴리염화 비닐(PVC) 단일·복합재질 포장재 3)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포장재 가) 단일재질 무색 나) 단일재질 유색 다) 복합재질 4) 단일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PSP) 5) 운활유용기 포장재 6) 비료사료 포장재 7) 폴리프로필렌(PP) 마대 8) 1)부터 7)까지 외의 단일재질 용기류 및 쟁반용 용기(tray) 9) 1)부터 7)까지 외의 단일·복합재질 필름· 시트형 포장재 10) 1)부터 9)까지 외의 복합재질 포장재 | kg당 1,130원 kg당 272원 kg당 359원 kg당 551원 kg당 240원 kg당 417원 kg당 123원 kg당 213원 kg당 180원 kg당 715원 kg당 715원 |
| 2. 제18조제2호에 따른 포장재 | 가. 발포합성수지 단일·복합재질 완충재 나.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형 포장재 | kg당 240원 kg당 715원 |
| 3. 제18조제3호에 따른 포장재 및 같은 조 제3호의 2에 따른 제품 | 단일·복합재질 1회용 봉투·쇼핑백 및 합성수 지재질[폴리염화 비닐(PVC)은 제외한다] 필름 류 | kg당 715원 |
| 4. 제18조제4호에 따른 제품 | 가. 수은전지 나. 산화은전지 다. 니켈카드뮴전지 라. 리튬전지(1차전지만 해당한다) 마.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바. 니켈수소전지 | g당 60.6원 g당 37.7원 g당 0.997원 g당 1.5원 g당 0.485원 g당 0.3원 |
| 5. 제18조제5호에 따른 제품 | 타이어 | kg당 45원 |
| 6. 제18조제6호에 따른 제품 | 운활유 | ℓ 당 30원 |
| 7. 제18조제7호에 따른 제품 | 가. 형광등 나. 발광다이오드 조명 | 개당 113원 |

| | | |
|-------------------------|----------------------------|------------------------|
| | 1) 전구형(電球形) 2) 직관형(直管形) | kg당 1,249원 kg당 943원 |
| 8. 제18조제8호에 따른 제품 | 수산물 양식용 부자 | kg당 719원 |
| 9. 제18조제9호에 따른 제품 | 곤포(몽치) 사일리지용 필름 | kg당 113원 |
| 10. 제18조제10호 에 따른 제품 | 합성수지재질 김발장 | kg당 96원 |
| 11. 제18조제11호 에 따른 제품 | 가. 산업용 필름 | kg당 428원 |
| | 나. 교체용 정수기 필터 | kg당 424원 |
| | 다. 안전망 | kg당 314원 |
| | 라. 어망 | kg당 522원 |
| | 마. 로프 | kg당 476원 |
| | 바. 폴리에틸렌 관 | kg당 417원 |
| | 사. 폴리염화비닐 제품 | kg당 503원 |
| | 아.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 kg당 188원 |
| | 자. 파렛트 | kg당 417원 |
| | 차. 플라스틱 운반상자 | kg당 417원 |
| | 카. 창틀·문틀 | kg당 407원 |
| | 타. 바닥재 | kg당 407원 |
| | 파. 건축용 단열재 | kg당 618원 |
| | 하. 전력·통신선 | kg당 598원 |
| 거.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 kg당 431원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에는 재활용비용산정지수를 1.0
으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
| 연 락 처 | (044) 201 - 7381 |